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8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윤미향 · 강선우 · 고용진
김경만 · 남인순 · 송옥주
안호영 · 용혜인 · 유동수
이상직 · 이소영 · 야진(비)
이원욱 · 이학영 · 임종성
장철민 · 정성호 · 정춘숙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

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5항 및 제41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하여 제4항의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③ (생 략)</p> <p>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u>하여야 한다.</u></p> <p><u>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하여 제4항의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u></p>
<p>제41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u></p>
<p><u>2의2. 2의3.</u> (생 략)</p>	<p><u>2의3. 2의4.</u>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p>
<p>3. ~ 16. (생 략)</p>	<p>3. ~ 16. (현행과 같음)</p>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